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134호 2015. 11. 30.(월)

## 차 례

### 규 칙

-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
일부개정규칙 ----- 1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1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3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1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---- 5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161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 
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----- 7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1632호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1-30호선)사업  
공사완료 공고 ----- 15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1633호 종이수입증지 환매신청 청구 안내 ----- 16



품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금품등”을 “금품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금품등”을 “금품 등 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금품등”을 “금품 등 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 본문 중 “금품등”을 “금품 등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제외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 중 “금품등”을 “금품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금품 등”을 “금품 등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금지된 금품등의 처리)”를 “(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)”로 하고, 제21조제1항 중 “금품등을”을 “금품 등을”으로, 제21조제2항 중 “금품등이”를 “금품 등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”를 “공무원 신규 임용자, 6급 승진자,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게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 - 177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11. 27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건지로 294외 19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램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11. 2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5-11-27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8-11, 108-9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94 (가좌동)	2009-09-22	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(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)	
2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-486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8-67 (가좌동)	2009-09-22	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(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)	
3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-517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8-69 (가좌동)	2009-09-22	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(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)	
4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-485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8-71 (가좌동)	2009-09-22	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(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)	
5	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01-5, 401-1	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57-3 (검암동)	2009-09-22	검암의 옛 지명인 검바위에서 명명	
6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0	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99 (오류동)	2009-09-22	봉수대로에서 나와 단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	
7	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82-2	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5-16 (연희동)	2010-11-11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	
8	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67-6	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32 (검암동)	2009-09-22	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	
9	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71-16	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224번길 4 (검암동)	2009-09-22	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,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0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59-4	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42번길 35-3 (경서동, 두호파크빌)	2009-09-22	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1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-140	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길 9 (경서동)	2013-07-30	보석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2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-58	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45번길 16 (석남동)	2015-11-13	북향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ㄱ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	
13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-47	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45번길 19 (석남동)	2015-11-13	북향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ㄱ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	
14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-23	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45번길 31 (석남동)	2015-11-13	북향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ㄱ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	
15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83-84, 183-83	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6번길 6-4 (석남동)	2009-09-22	새오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6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-480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32 (오류동)	2008-12-3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,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7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-28	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08 (석남동)	2009-09-22	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	
18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0-9	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47 (원창동)	2009-09-22	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	
19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-25	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90번길 7 (석남동)	2015-11-13	원석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도로	
20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-110	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16번길 15 (경서동)	2013-07-30	푸른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- 178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5. 11. 27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새오개로16번길 6-6외 8건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	별도열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

고시일 : 2015-11-27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183-83	새오개로16번길 6-6	2015.11.16	건물 멸실	
2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183-84	새오개로16번길 6-4	2015.11.16	건물 멸실	
3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36-2 외 2필지 (836-9,836-10)	드림로 406-7	2015.11.03	건물 멸실	
4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38-1	가좌로 23	2015.11.05	건물 멸실	
5	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5-15	완정로228번길 18	2015.11.17	건물 멸실	
6	인천광역시 서구석남동 520-11	염곡로260번길 10	2015.11.20	건물 멸실	
7	인천광역시 서구석남동 520-12	염곡로260번길 12-2	2015.11.20	건물 멸실	
8	인천광역시 서구석남동 520-13	염곡로260번길 12-4	2015.11.20	건물 멸실	
9	인천광역시 서구석남동 520-14	염곡로260번길 10-1	2015.11.20	건물 멸실	

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5 - 1615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11월 25일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## 1. 개정이유

-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사업 및 구민의 권익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원 신설 및 범위 확대(안 제6조)
- 보조금지원 범위를 총사업비 대비 각 5퍼센트 상향(안 제6조, 별표)
- 대상 단지별 지원 상한액 상향

##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. 12. 15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건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 ☎032-560-4736, FAX 032-560-2769 ]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참고사항

-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규칙(안)

##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」(이하“조례”라 한다)”를 “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례 제3조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제3조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청장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6. 「임대주택법」에 따른 임대아파트

제3조제7호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별표1과”를 “별표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조례 제4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긴급 보수·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(부대시설 포함)은 총사업비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의2제3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전단 중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 공무원”으로 한다.

“별표 1”을 “별표”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 별표 ]

##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

(제6조 관련)

□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

총 사업비	지 원 기 준		비 고
	의무관리	임의관리	
7백만원 이하	전 액	전 액	
7백만원 초과 ~ 2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7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85/100범위내	
2천만원 초과 ~ 3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80/100범위내	
3천만원 초과 ~ 4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5/100범위내	
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

※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, 임의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」----- ----- -----.
제2조(종합계획 수립) <u>조례</u>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	제2조(종합계획 수립)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3조--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지원제외) <u>구청장</u> 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 1. ~ 5. (생략) 6.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 7. 그 밖의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<u>심의위원회</u> 에서 결정한 사업	제3조(지원제외) <u>인천광역시 서구청장</u> 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임대주택법」에 따른 임대아파트 7. ----- ----- <u>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</u>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--
제4조(사업의 조사 선정) ①·②(생략)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건축과장은 <u>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</u>	제4조(사업의 조사 선정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<u>위원회의</u> -----

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관리주체(이하 "지원대상자"라 한다)를 선정<sup>한</sup>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조금 교부) ①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. <단서 신설>

②·③ (생략)

제6조의2(업무의 위탁 및 보고) ①  
· ② (생략)

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위탁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.

④·⑤ (생략)

제7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당해 공동 주택관리규약에 따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보조금 교부) ①-----

-----  
별표와 -----. 단, 조례 제4조 제2항제12호에 따른 긴급 보수·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(부대시설 포함)은 총사업비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업무의 위탁 및 보고) ①  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 
-----  
----- 범위에서 -----  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-----  
-----  
----- 해당 -----

<p>라 집행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8조(지도 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<u>관계공무원</u>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지도 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관계</u></p> <p><u>공무원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< 소관 부서명 >

<p>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</p>	
<p>연 락 처</p>	<p>(032) 560 - 4737</p>

## <관계 법령 발췌 사항>

### □ 주택법 제43조제9항

#### 제43조(공동주택의 지원 및 대상)

-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□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4조

#### 제4조(공동주택의 지원 및 대상)

-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4.11.10, 2015.10.7)
- ② 제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(개정 2015.10.7)
1.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, 유지 보수(개정 2015.10.7)
  2. 어린이놀이터 보수
  3. 경로당 보수
  4. 상·하수도 시설 관리(도로에 매설된 상·하수도시설)(개정 2015.10.7)
  5.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 등 시설 보수<신설 2015.10.7>
  6.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(공동화장실, 파고라, 단지경계 울타리, 벤치, 체육시설 등)<신설 2015.10.7>
  7.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<신설 2015.10.7>
  8.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<신설 2015.10.7>
  9.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처리시설 및 친환경 시설의 설치·개선<신설 2015.10.7>
  10.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·개선<신설 2015.10.7>
  11.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·개선<신설 2015.10.7>
  12.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3의2에 따라 안전등급기준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을 받아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여 제7조제2항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<신설 2015.10.7>
  13.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·옹벽 등의 보수<신설 2015.10.7>
  14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<신설 2015.10.7>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- 1632호

##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1-30호선)사업 공사완료 공고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-55(2014.04.21.)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한 인천도시계획시설 【도로명:소로1류30호선, 사업명:검암동 소1-30호선 도로개설공사】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15. 11. 30.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211-47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종 류 : 도시계획시설 도로(소로1류30호선)

○ 명 칭 : 검암동 소1-30호선 도로개설공사

3. 사업시행 규모

○ L = 647m, B = 5m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연장(m)		비고
				총폭원	금회	총연장	금회	
도로	소로	1	30	10	5	678	647	금회시행으로 일부구간완료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성 명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

5. 사업기간 : 2014. 04. 21 ~ 2015. 5. 16.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- 1633호

## 종이수입증지 환매신청 청구 안내

"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"가 2015.10.30일 개정·공포되어, 각종 제증명 발급 시 종이수입증지 대신 인증기, 무인민원발급기, 각종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사용하게 됩니다. 이에 개인,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는 사용할 수 없어, 회수·환매코자 하오니 환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. 11. 27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- 신청기간 : 2016. 1. 31.까지
- 대 상 자 : 인천광역시 서구 종이수입증지 보유자
- 환매금액 : 종이수입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  
(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)
- 제외대상 :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
- 방 법 : 종이수입증지, 환매청구서, 통장사본 제출
- 제 출 처 : 방문접수(서구청 1층 세무1과)
- 기타문의사항 : 서구 세무1과 (여동신 ☎032-560-4968)

**※ 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매가 불가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꼭 환매신청하시기 바랍니다.**

붙임 1. [별지 제4호서식]수입증지 환매청구서. 끝.

[별지 제4호서식]

## 수입증지 환매청구서

서구청장 귀하

성 명			
주 소			
사 유			
환매금액		액면금액	
내 역			
종 별	수 량	액면금액	환매금액
환불은행, 계좌번호 :			
전화번호 :			

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청구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 또는 서명)